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8.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 12. 22. 이재관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 12.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3. 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6. 5. 20.)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 5. 20.)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재관의원)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성소미)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이 펀드운용 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현행법 제40조제1항¹⁾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등”)에게 금지되는 행위로서 ①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제1호), ②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제2호), ③ 벤처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제3호), ④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벤처투자회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상법」 제466조에 따른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벤처투자회사의 투자활동 등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벤처투자회사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금리, 수수료 또는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에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등이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대주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조건으로 대주주등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제4호),
⑤ 투자실적 관련 보고 자료의 작성과정에서 벤처투자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제5호)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78조제1항은 금지행위를 한 대주주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등 특정 이해관계자가 금전 제공 등을 통해 펀드 운용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벤처투자회사의 의사결정이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고 대주주 등의 계열사 지원, 특정 투자처 편중 등 사익편취를 위한 내부거래 발생위험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회사 경영의 공정성,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품 등 제공·수수를 대주주 등의 행위제한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고 위반 시 해

당 계약조건을 무효로 하고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안 제52조의2는 불공정 계약조건으로 ① 경영성과지표 변동을 이유로 한 투자금 조기 회수, ② 유예기간 없는 투자금 조기 회수, ③ IPO 실패를 이유로 한 과도한 투자금 감액(Refixing)²⁾ 등을 제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불공정 투자계약 요건은 「모태펀드 기준규약」에 반영되어 불공정계약으로 규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자펀드 선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나 동 제재는 모태펀드에만 한정되는 것이므로,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조건을 벤처투자 일반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위반 시 직접 벌칙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개정안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조건 설정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초기혁신기업 등 피투자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 협상력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안 제78조는 불공정 투자계약을 체결한 업무집행조합원을 5년

2) 벤처투자에서 리픽싱은 상환전환우선주(RCPS) 등 전환형 증권의 전환가격을 투자 이후 기업가치 하락이나 저가 후속 투자 발생 시 조정하여 투자자의 가치 회수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대주주등에 대한 현행법의 벌칙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동일한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불공정계약 체결행위를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입법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 투자계약을 근절하고 건전한 벤처투자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규정 신설 취지에 동의하나, 유사규정(제3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과의 형평성, 불공정 계약체결에 관한 입법례,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환경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벌칙보다는 행정처분 부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불공정 투자계약 설정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서류 검사 근거 추가 등 조문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내용 중 유사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공정 투자계약에 대해 벌칙이 아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안 제36조제1항제7호의2, 제49조제1항제8호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2, 제72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안 제78조제1항제4호 삭제).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수정을 거침(수정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5. .

제안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와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의 불공정 투자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개정안의 내용 중 유사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불공정 투자계약에 대해 벌칙이 아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7호의2, 제49조제1항제8호의2, 제62조제1항제6호의2, 제72조제2항제3호의2 신설 및 안 제78조제1항제4호 삭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4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안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를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이하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라 한다)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투자금액을 감액하는 조건”을 “최초 투자계약 시 정한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벤처투자 대상 기업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7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투자계약의 설정 여부의 확
인이 필요한 경우
안 제7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illegible]

소하여야 한다.

1. ~ 8. (생략)

<신 설>

9. ~ 14. (생략)

② · ③ (생략)

<신 설>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 대상 기
업과 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조건
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_____.

1. ~ 8. (개정안과
같음)

8의2. 벤처투자조합
의 업무집행조합
원으로서 제52조
의2제1항을 위반
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
한 경우

9. ~ 14.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

벤처투자조합이 투
자하려는 업체(이
하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라 한다)와

_____.

	<u>저하게 불공정한</u> <u>조건으로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u> <u>조건</u> ② <u>제1항제1호부터</u> <u>제3호까지에 해당</u> <u>하는 계약조건은</u> <u>그 부분에 한정하</u> <u>여 무효로 하고,</u> <u>같은 항 제4호에</u> <u>해당하는 계약조건</u> <u>은 벤처투자 대상</u> <u>기업에 현저하게</u> <u>불공정한 경우 그</u> <u>부분에 한정하여</u> <u>무효로 한다.</u>	② <u>제1항제1호부</u> <u>터 제4호까지에 해</u> <u>당하는 계약조건은</u> <u>그 부분에 한정하</u> <u>여 무효로 한다.</u>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 하여 등록 취소, 6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현행과 같음)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다음 각 호의 자의
업무 운영상황을
확인·검사하거나 다
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
다.

1. 전문개인투자자
2. 개인투자조합
3. 창업기획자
4. 벤처투자회사
5. 벤처투자조합
6. 한국벤처투자
7.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인 유한회사 또
는 유한책임회사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
우 업무집행조합원
을 포함한다)의 소

② -----

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③ · ④ (생략)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제78조(벌칙) ① ----- ----- ----- ----- -----. 1. ~ 3. (현행과 같음)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3의2.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투자계약의 설정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 7. (개정안과 같음)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제78조(벌칙) ①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	--	---

<u><신 설></u>	4. 제52조의2제1항	<u><삭 제></u>
	<u>을 위반하여 벤</u> <u>처투자 대상 기</u> <u>업에 불공정한</u> <u>계약조건을 설정</u> <u>하여 계약을 체</u> <u>결한 벤처투자조</u> <u>합의 업무집행조</u> <u>합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4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며,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의”를 “제5호까지
의”로 한다.

5.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
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제49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
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51조제4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
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

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하려는 업체(이하 “벤처투자 대상 기업”~~
~~이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공정한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금액의 조
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
2. 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
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
3. 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사유로~~ 대통
~~아니하였다는 이유로~~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 ~~서~~ 정한 증권
~~에서~~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
정하여 무효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제70조의2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 의 확
계약조건

인이 필요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② (생략) ③ 개인투자조합이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u>중 권시장</u> 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④ (생략)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중 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 다)</u> ----- ----- ----- ----- ----- -----.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획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기획자에 대하여 등록 취 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 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 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	제36조(창업기획자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 ----- ----- -----.

다.

1. ~ 7. (생략)

<신설>

8. ~ 11. (생략)

② · ③ (생략)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대주주등”이라 한다)은 벤처투자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등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신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

1. ~ 7. (현행과 같음)

7의2.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8. ~ 11.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벤처투자회사 대주주등의 행위제한)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사결정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운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수수하는 행위

6. -----제5호까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⑤ ~ ⑦ (생략)

<신설>

-----.

1. · 2. (생략)

⑤ ~ ⑦ (생략)

제52조의2(불공정한 계약조건의 금지) 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벤처투자기업이 투자하려는 업체를 말하며, 이하 같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성과 지표의 변동을 이유로 투자

	<u>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조건</u> 2. <u>투자금액의 조기 상환을 강제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조건</u> 3. <u>벤처투자 대상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였다</u> <u>는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최초 투자계약</u>^{에서}<u>의</u><u> 정한 증권 가격을 조정하는 조건</u> 4. <u>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조건</u> ② <u>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계약조건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u>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 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	제62조(벤처투자조합 등록의 취소 등) ① ----- ----- ----- ----- ----- -----

령,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신설>

7. ~ 12. (생략)

② ~ ⑤ (생략)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투자조건부 용자를 받으려는 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등을 매매하기 위하여 개설한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이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5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설정한 경우

7.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0조의2(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증권시장 -----

하 이 조에서 “비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벤처투자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일 것 2. (생략) ③ · ④ (생략)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조합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포함한다)의 소재지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감사보고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4. ~ 7. (생략) ③ · ④ (생략)	----- ----- ----- 2. (생략) ③ · ④ (생략) 제72조(보고와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불공정한 계약조건의 설정 여부^설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